

(주)엔투비	지침	표준번호	G.600.603
		개정번호	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일자	2024.12.19
		페이지	1 / 10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제정일자 : 2021년 10월 01일

구 분	관 리	결 재
부 서	정도경영그룹	대표이사
성 명	전복수	이원중
년.월.일	2024.12.19	2024.12.19

(주)엔투비	지침	표준번호	G.600.603
		개정번호	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일자	2024.12.19
		페이지	2 / 10

- 개정 이 력 -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항목	비고
0	2021.10.0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재제정	
1	2022.07.05	제4조(대표이사의 지원) 조항명 변경 제5조(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내용추가 제7조(자율준수협의회 구성) 신설 제8조(자율준수협의회 운영 및 역할) 신설 제10조(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내용추가 제11조(교육프로그램 운영) 내용추가 제13조(공정거래 모니터링) 내용추가 및 변경 제14조(CP 운영의 효과성평가) 조항명 변경 및 내용추가	정도경영그룹-000120
2	2022.11.28	제4조(자율준수의지 선언 목적) 신설 제5조(자율준수의지 선언 방법) 신설 제7조(자율준수관리자 독립성 보장) 신설 제9조(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내용추가 제10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신설 제13조(공정거래 실천리더의 선임 및 역할) 신설 제14조(CP 주관부서의 구성) 신설 제15조(CP 주관부서) 신설 제16조(임직원의 의무) 신설 제19조(교육프로그램운영) 내용추가 제21조(위험성평가) 신설	DEP02416742022110070
3	2023.11.30	제19조(교육프로그램운영) 내용추가	DEP02416742023110064
4	2024.08.23	제3조(용어 정리)내용 수정 제8조(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내용 수정 제11조(자율준수협의회 구성) 내용 수정 및 추가 제18조(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내용 수정 제21조(위험성평가)내용 수정	DEP02454562024080050
5	2024.12.19	제4장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신설(제26조~제33조)	DEP02416742024120054
6			
7			
8			
9			

(주)엔투비	지침	표준번호	G.600.603
		개정번호	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일자	2024.12.19
		페이지	3 /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엔투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되며,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와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고시, 지침을 말한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교육, 감독 등 회사 내부의 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CP’라 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란 회사 실장 중 CP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전반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회(재정 및 내부거래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자를 말한다.
- ‘자율준수협의회’란 자율준수관리자를 자문하고 담당부문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감독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 ‘담당부문’이란 자율준수협의회 위원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감독하는 실 단위 소속 부서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CP 주관부서’라 함은 CP 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책임과 권한

제4조(자율준수의지선언 목적) 최고경영자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CP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준수의지선언 방법)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되어 회사의 임직원, 고객사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최고경영자의 지원)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주관부서가 직무수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7조(자율준수관리자 독립성 보장)

(주)엔투비	지침	표준번호	G.600.603
		개정번호	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일자	2024.12.19
		페이지	4 / 10

-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 중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수행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회사의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회사는 본 지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제8조(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그 역할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 부서에 소속되어야 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CP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또는 이사회 의결로 새로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CP기획, 운영 및 감독
- CP평가·개선 및 운영현황 보고
-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자율준수와 관련된 임직원 교육
- CP 활동 및 사안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 기타 C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제10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 또는 회사 임직원에 대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 권한
- CP 준수실태에 대한 점검 및 조사 권한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보고 권한
-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조치 요구 권한

제11조(자율준수협의회 구성) 자율준수협의회는 4명 이상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한다. 단, 자율준수협의회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인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와 관련이 높은 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 CP 주관부서의 그룹장은 간사로서 자율준수협의회 실무운영을 총괄한다.

제12조(자율준수협의회의 운영 및 역할)

- 자율준수협의회는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2인 이상의 위원 요청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주)엔투비	지침	표준번호	G.600.603
		개정번호	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일자	2024.12.19
		페이지	5 / 10

2. 자율준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① 자율준수 기본방침 설정,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 심의 및 필요사항 권고, 자문
- ②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서간의 업무 조정
- ③ 위원별 담당부문의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실시 및 감독, 그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
- ④ 각 위원별 담당부문의 자율점검에 대한 감독
- ⑤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

제13조(공정거래 실천리더의 선임 및 역할)

1.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담당부문의 자율준수 활동을 위해 적절한 자질을 갖춘 인원을 선별하여 공정거래 실천리더로 임명한다.
2. 공정거래 실천리더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①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활동 지원
 - ② 부서 내 공정거래 관련 상담 및 자문
 - ③ 부서 내 자율점검 활동 주관
 - ④ CP 운영 개선사항 발굴

제14조(CP 주관부서의 구성) 자율준수관리자는 원활한 CP운영을 위하여 CP주관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5조(CP 주관부서)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직속의 CP주관부서를 두며 CP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보좌
2. CP의 실행에 필요한 계획 작성 및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시행
3. CP 운영상의 실무적인 문제처리 및 CP 운영 효과성 평가
4.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연관된 사내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 지원활동
5.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전파
6.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자율준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주관
7. CP에 대한 문서관리체계 구축
8.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개정 및 배포
9. 공정거래 관련 모니터링
10. 사전업무협의체도의 시행

제16조(임직원의 의무)

1.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CP주관부서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3. 모든 임직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주)엔투비	지침	표준번호	G.600.603
		개정번호	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일자	2024.12.19
		페이지	6 / 10

에는 CP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3장 업무절차

제17조(CP의 운영)

1. CP 주관부서는 CP 실행에 필요한 계획을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며, CP 활동내역을 반기 1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CP 주관부서는 CP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관련 문서를 현업 부서에 요청 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18조(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1.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이 실제 업무수행의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 편람을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편람은 관련 법규 및 회사 규정 변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검토 후 주기적(연 2회 이상) 개정하며, 개정사항을 모든 임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3.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야 하며, 임직원의 자율준수편람 활용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활용 편의성을 지속 개선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프로그램 운영)

1.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① e-러닝 과정을 이용한 on-line 교육
 - ② 각 부서별, 계층별 특성에 맞는 off-line 교육
 - ③ 기타 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한 필요한 교육
2. CP 주관부서는 교육별 의무 수강부서를 선정하여 이를 공지할 수 있으며, 의무 수강 부서로 선정된 부서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CP 주관부서는 의무 교육 미이수 대상자 명단을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미이수자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CP 주관부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평가 및 설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확인된 개선사항을 다음 년도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한다.
4. CP관련 교육을 하는 사외강사의 자격은 법무법인 전문기관 등에서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으로 하며 사내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로 한정 한다.
 - ① 공정거래 관련 업무경력 1년 이상
 - ②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CCP) 2급 이상 자격 소지
 - ③ 사외 공정거래 전문교육기관 강의 수료 2회 이상

제20조(현업부서의 공정거래 자율점검)

(주)엔투비	지침	표준번호	G.600.603
		개정번호	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일자	2024.12.19
		페이지	7 / 10

1. 임직원은 공정거래 웹사이트, 모바일 앱, 편람 등의 자율점검 Check List를 활용하여 일상업무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한다.
2. 자율점검 결과 법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CP 주관부서 등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

제21조(위험성평가) CP주관부서는 부서별 업무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를 평가하고, 적합한 통제를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는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리스크등급은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한다.
2. 리스크등급이 '상' 등급 이상의 경우 적절한 통제방안을 강구하여 해당 리스크를 회피, 경감 또는 제거한다.

제22조(공정거래 모니터링)

1. CP 담당자는 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수감부서는 CP 주관부서의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3. CP 주관부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경영층에 보고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한다.

제23조(CP 운영의 효과성평가)

1. 자율준수관리자는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취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체평가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CP 등급평가를 받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CP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상담, 신고 및 신고자 보호)

1. CP 주관부서는 부서 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인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2. 각 부서 공정거래 실천리더 또는 업무 담당자는 자율점검 시 해당 업무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CP 주관부서에 상담을 의뢰해야 한다.
3. 상담요청인은 상담 전 공정거래 웹사이트, 모바일 앱, 편람 등을 통한 자율점검을 먼저 실행한 후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4. 상담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상담인은 필요시 관련 정부부처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상담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6. 상담인은 현업부서에서 상담의뢰한 사항에 대해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7.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이를 CP 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이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 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
8. 회사는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자의 신분 누설,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및 색출

(주)엔투비	지침	표준번호	G.600.603
		개정번호	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일자	2024.12.19
		페이지	8 / 10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신고자에게 고용관계 등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제25조(제재 및 포상)

- CP 운영지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CP 주관부서나 이를 인지한 부서 책임자는 징계 주관부서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서 책임자는 위반 사실을 CP 주관부서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 CP 주관부서의 징계요구는 내부감사 지침에 따르고, 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취업규칙 및 상벌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민형사상 제재로 벌금을 부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보전할 의무가 없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임직원 및 부서에 대해 포상 하거나 인사부서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장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제26조(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공정거래 관련업무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위원장	1) 위원장은 협의회 주관부서(정도경영실)의 담당 임원으로 한다. 2)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운영에 대한 방침을 설정한다. 3) 협의회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의장이 된다. 4) 협의회에서의 의결권 및 의결이 가부동수 일 때의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	1)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에 앞서 유관부서 직책자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통지한다. 2) 협의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3) 협의회에 안건을 제안 또는 설명할 수 있다.
간사	1) 간사는 협의회 주관부서의 직책자(정도경영그룹장)로 선임한다. 2) 협의회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협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4) 회의록의 작성 및 관계서류 보관과 처리사항에 대한 위원장 보고 업무를 담당한다.

제27조(분쟁조정 신청 및 대상)

- 협의회는 회사와 협력사와 계약의 내용 및 이행 등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발의부서, 계약부서 또는 협력사(이하 “당사자들”이라 한다)의 신청이나 자율준수관리자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 회사는 하도급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을 회사 홈페이지, 공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상시접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 당사자들은 조정 신청 시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근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주)엔투비	지침	표준번호	G.600.603
		개정번호	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일자	2024.12.19
		페이지	9 / 10

하며 분쟁조정협의회는 필요시 유관부서 및 협력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하도급 관련 계약에 대한 분쟁
- ② 기타 거래 시 발생한 분쟁

제28조(분쟁조정 절차)

1. 회사는 분쟁 조정 접수 후 45일 이내에 협의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2. 협의회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사결정한다.
 -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부의 안건이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9조(협의 절차의 종료) 협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 ① 회사 및 협력사간 협의를 성립하여 각 당사자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기명 날인 함으로써 종료한다.
- ② 협의 절차 기한 및 연장된 협의 기한 내에 회사 및 협력사간 협의안 도출에 실패한 경우 기한 만료로 자동적으로 종료한다.
- ③ 협의 절차 진행 중 회사 또는 협력사가 협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포기한다는 서면 통지를 한 경우 종료한다.

제30조(핫라인 구축) 회사는 협력사와의 신속한 의견 청취 및 분쟁 해결을 위해 협력사가 회사에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31조(위임) 위원장은 본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32조(비밀유지) 협의회 및 관련 임직원은 분쟁조정 관련 업무에서 취득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회의록)

1. 위원장은 조정 경과와 협의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 2인이상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3.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주)엔투비	지침	표준번호	G.600.603
		개정번호	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일자	2024.12.19
		페이지	10 /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07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